

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수정 안내

○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
1) 모두채움으로 신고하는 경우: 신고화면 이동 ▶ 정기신고



2) 일반신고로 신고하는 경우: 일반신고 선택 ▶ 정기신고



○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'저장 후 다음이동' ▶ 다시 작성하기 '확인'

(기존 신고된 내역이 없는 경우 신규로 작성)



○ 기존 신고서 불러오기 '확인'

teht.hometax.go.kr에 삽입된 페이지 내용:
기존 제출하신 신고서를 불러오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.
(새로 작성하려면 [취소]를 눌러주세요.)

확인 취소

종합소득세 신고

내역 조회 (접수증·납부서) 신고 부속·증빙서류 제출

○ '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' 선택 후 '선택자료 수정'

세액의 계산

근로/연금/기타(종교인) 소득 명세서
* 연말정산간소화, 지급명세서(근로, 연금 등)를 불러오기 하려면 추가인증(간편인증, 공동인증 등)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근로/연금/기타(종교인) 소득 불러오기 **추가입력** **선택자료 수정** 선택자료 삭제

소속구분	소득의 지급자		총수입금액 (총급여액·총연금액)	필요경비 (근로소득공제·연금소득공제)	소득금액
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상호(성명)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60	221-82-10213	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		
<input type="checkbox"/>	60				

○ 총수입금액, 필요경비,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 수정

소득의 지급자정보 입력

※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<소속구분> 코드는 58,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<소속구분> 코드는 67입니다.

소속구분	기타소득 60		
소득의지급자 (소득을 지급한 자)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221-82-10213 조회	상호(성명)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
총수입금액 (총연금액)	<input type="text"/>		필요경비 (연금소득공제)
소득금액 :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	<input type="text"/>		
원천징수 소득세 ?	<input type="text"/>		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?
	<input type="text" value="0"/>		

등록하기 닫기

- 총수입금액: 원천징수영수증 12번 합계액
- 필 요 경 비 : 원천징수영수증 14번 합계액
- 소 득 세 : 원천징수영수증 17번 합계액

○ 제출화면 이동 ▶ 위택스 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

가산세액 계산명세 상세내역 펼치기 가산세 감면 도움말

(57) 종결정세액 : (46) + (47)

(58)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
원천징수 및 납세조항징수 세액 원천징수세액입력

(59)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: (57) - (58)

▶ **농어촌특별세의 계산** 상세내역 펼치기

※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.

▶ **나의 환급계좌 (본인명의계좌만 가능)**

은행
계좌번호 **계좌검증**

· 카카오톡, 토스뱅크는 한국은행에서 국제환급금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지 않아 환급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·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검토 후 6월말~7월초 입금예정입니다.

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※ 소득세 신고 방법 : 「소득세법」 제70조,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7조
가산세 부과 방법 : 「국세기본법」 제47조의3

이에 동의합니다.

이전 **제출화면 이동**

날 | 제출여부 >>> **제출**을 작성중입니다. **마리보기**

▶ **신고서 제출** **동영상(신고서 제출)** **화면도움말**

소속자 () 귀속년도 2022

신고유형 정기신고(40,비사업자)

▶ **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**

종합소득세 원
농어촌특별세 0 원

상세내역 펼치기

▶ **환급계좌 정보**

금융회사 계좌번호

▶ **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(위택스) 정보 제공동의**

소득세 신고서의 전화번호, 환급계좌번호,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를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(위택스)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 예, 동의합니다. 아니오, 동의하지 않습니다.

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소득세 신고 종료 후 [지방소득세 신고하기]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

이전 **신고서 제출하기**

○ 종합소득세 접수 내역 확인 ▶ 신고서 제출목록 조회 후 지방소득세 '신고이동'

teht.hometax.go.kr에 로그인된 페이지 내용:
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.
(아래 '신고내역 조회(접수증)' 버튼 클릭)

확인

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

종합소득세 납부(환급)할 세액	0	증거종류별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	
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	0	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	

※ (중요)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※ (주의)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.
 ※ (확인)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※ (안내)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, '종합소득세' '첨삭면에서 [신고 부속 - 증명서류 제출]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.
 ※ (안내) 종합소득세 정기신고(신고분)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.
 ※ 국세가 결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결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
 ※ (안내) **개인지방소득세 신고(결정청구는 제외)를 위해 '신고내역 조회(접수증 - 납부서)' 또는 '전자신고결과 조회, 화면에서 '지방소득세 신고' 버튼을 클릭하세요.**
 ※ 귀하의 성명 신고 납부에 검사합니다. 성실납세 우대제도(세금포인트 제도, 모범납세자 제도)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 * 국세청 홈페이지 > 납세자관리 > 성실납세우대 > 세금포인트-모범납세자
 ※ (안내)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그 체납된 세금을 충당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.

확인하였습니다.

인쇄하기 **신고내역 조회(접수증)** 납부하기 납부서 조회(가산세재확인) 송달장소(연경)신고 증명서류 제출 닫기

3개월 6개월 1년 사업자등록번호/주민등록번호

수증의 상태(성명), 사업자번호, 사용자 ID, 사용자명 항목

조회하기

개별납부서 일괄 출력 **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** 개별접수증 일괄 출력 10건

접수방법	접수일시	접수번호(신고서보기)	접수서류	접수증	납부서	제출자 ID	부속서류 제출여부	지방 소득세
인터넷...	2023-05-...	217-20...	접수서류 1종	보기	보기	N		신고이동

○ 위택스 신고금액은 홈택스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산출되므로,
금액 확인 후 신고

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tax reporting. The top section is titled '환급계좌' (Refund Account) and contains two input fields: '환급은행' (Refund Bank) and '환급계좌' (Refund Account). Below this is the '동의 여부' (Consent) section. It contains a paragraph of text explaining the reporting process and a checkbox labeled '이제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' (I agree and submit the return). A red box highlights the checkbox and the '신고' (Report) button below it.

※ 기존에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신청 또는 추가세액을 납부하신 경우
위 절차대로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기존의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변동되므로,
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환급신청을 하신 경우

- 소득세: 기신고된 종합소득 금액을 수정하면 환급세액도 자동 수정 및 반영되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변경된 최종 환급세액으로 환급 예정
- 지방소득세: 관할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환급 요청

2. 세액을 납부 하신 경우

- 1) 소득금액 수정 후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변경된 최종 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
 - 소득세: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추가 금액만 납부
 - 지방소득세: 관할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계좌번호로 추가금액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 후 납부
- 2) 소득금액 수정 후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변경된 최종 세액이 더 작아지는 경우
 - 소득세 →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차액 환급
 - 지방소득세 →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연락하여 차액 환급 신청